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일부개정 2022. 1. 14. 규정 제869호

1. 개정이유

-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 일부개정에 따른 우리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단위별* 상한을 정하여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함

* 교직원, 학생, 학부모, 전문가

- 그간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 측이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,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안하려는 것임

※ [참고]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3항 일부개정

제11조(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)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(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)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,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인 되도록 하고,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.

2. 주요내용

-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,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4항)
- 직위 현행화 및 자구 수정(제2조제2항, 제3조제2호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등교육법」 제11조제3항

※ (참고) 타 국립대 규정: 전남대·창원대·충북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불 임: 개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문

한국체육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, 학생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**교학처장**” 을 “**교무처장**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경제·경영·회계**” 를 “**학교 측 대표와 학생 측 대표가 협의하여 경제·경영·회계·법률 등**” 으로, “**총장**” 을 “**추천하며 총장**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**기타**” 를 “**그 밖에**” 로 한다.

부 칙(제869호, 2022. 1. 14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